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14
----------	-------

발의연월일 : 2026. 7. 13.

발 의 자 : 최혁진 · 김문수 · 손 솔
정혜경 · 윤종오 · 박민규
박용갑 · 조계원 · 서영석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는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으며, EU(CSRD), 일본(SSBJ),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를 법정 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우회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공시 정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기업들이 법률상 세이프하버(Safe Harbor)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

나아가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30조원 이상이라는 협소한 공시 대상 설정(약 58개사)과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3년 유예(2031년)는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탈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일반 투자자의 피해와 중소기업의 공급망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공시 대상을 현실화하고 명확한 법률적 면책 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환경 책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연결재무제표 기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에 관하여는 최초 의무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둠(안 제15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 나.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최초 의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둠(안 제159조의2제5항).
- 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에 대하여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함(부칙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2(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지속가능보고서”라 한다)를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 기회
2. 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범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3.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 감독 체계
4. 그 밖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공시기준에 따

라야 한다.

④ 최초로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게 되어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연도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을 지속가능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할 때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게 되어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는 “지속가능보고서”로 본다.

제161조의2제1항 중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반기보고서”로 한다.

제165조제1항 중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를 “제159조, 제159조의2, 제160조 및 제1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59조 및 제160조”를 “제159조, 제159조의2 및 제160조”로, “제159조제1항”을 “제159조제1항, 제15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조”를 각각 “제159조, 제159조

의2”로 한다.

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59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보고서

제446조제28호 중 “제159조”를 “제159조, 제159조의2”로,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를 “사업보고서 · 지속가능보고서 · 반기보고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속가능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벌칙 및 민사책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첫 3개 사업연도에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및 기재와 관련하여 제429조제3항제1호 및 제444조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배상의 책임을 질 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2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9조의2(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지속가능보고서”라 한다)를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u> <u>1.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 기회</u> <u>2. 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범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u> <u>3.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 감독 체계</u>

4. 그 밖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공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최초로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게 되어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연도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을 지속가능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할 때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u>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게 되어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⑥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는 “지속가능보고서”로 본다.</u>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59조의 <u>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u> 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 ----- ----- ----- <u>사업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반기보고서</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u>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u>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u>제159조, 제159조의2, 제160조 및 제161조</u> ---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59조, 제159조의2 및 제160조-----

-----제159조제1항, 제159조의2제1항-----

④ (현행과 같음)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 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
지 아니한 때

④ ~ ⑥ (생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략)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

1. ~ 12. (현행과 같음)

[illegible]

전문으로 하는 자 가. ~ 라. (생 략) <u><신 설></u> 마. ~ 사. (생 략) 14. ~ 29. (생 략)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27. (생 략)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 61조제1항을 위반하여 <u>사업보 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 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u> 29. ~ 64.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159조의2에 따른 지속 <u>가능보고서</u> 바. ~ 아. (현행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14. ~ 29.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 ----- ----- -----. 1. ~ 27. (현행과 같음) 28. 제159조, 제159조의2----- -----<u>사업보 고서·지속가능보고서·반기 보고서</u>----- ----- 29. ~ 64. (현행과 같음)
---	--